

###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0. 5. 12. 10시 경	상담유형	[ ] 방문 [x] 전화 [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김	생년월일	19 . . . .
	소속/직위(직급) 팀/ ( 급)	연락처	064-7 -

상담 내용

- 2020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 서류심사 평가위원 활동 시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

상담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및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으므로 채용 서류심사 평가위원 활동은 사전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년 5 월 13 일

행동강령책임관

김 미 정

(서명 또는 인)  
